

# 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17~130

제출일자: 2017. 10. .

제 출 자: 거 창 군 수

## 1. 요구이유

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2016.1.1.~2017.12.31.) 만료로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을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현 수탁기관에 재위탁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시 설 명: 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나. 위 치: 거창군 거창읍 강남로 1길 170

다. 사업내용: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라. 위탁대상 사무

-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 다문화가족 교육사업과 정착지원사업

-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마. 재계약 방법: 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계약 선정위원회 심의 결정

- 2017.9.28. 심의결과 재계약 적결

바. 재계약 단체: 거창기독교청년회 / 이사장 표정숙

사. 재계약 기간: 2018.1.1 ~ 2019.12.31. / 2년

아. 소요예산

- 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와 사업비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동법 제16조

- 「거창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20조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안내

### 3. 참고사항

#### 가. 민간위탁 운영의 필요성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사회복지시설 중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시설로 해당분야 전문적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함이 타당함
- 현 수탁기관은 다문화 전문가를 양성하여 다문화가족 조기정착을 돕고 있으며, 3년 주기로 평가하는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 만족도 부문에서 2014년 도내 1위, 2016년 13개 사업별 만족도 조사 결과 5점 만점에 평균 4.84점을 달성하여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기관으로 평가
- 특수시책사업으로 친정나들이를 지원하고 결혼이민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2018년부터 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문화가족의 눈높이에 맞추어 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현 수탁기관의 재위탁이 바람직함

#### 나. 관계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 「거창군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 「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제20조

#### 다. 그간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 2017.9월: 거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계약 선정위원회 심의
- 2017.10월: 군의회 주례보고 → 일반의안 상정
- 2017.12월: 재계약 체결
- 2018.1.1. ~ 2019.12.31. / 2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라. 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계획: 따로 붙임

# 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계획

- ❖ 2017.12.31. 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이 종료됨
- ❖ 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계약 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재계약 적절로  
현 수탁기관에 재위탁하여 운영코자 함

## I 위탁개요

### ○ 위탁현황

| 기관명              | 위탁단체                | 소재지               | 센터장 | 종사자 | 비고 |
|------------------|---------------------|-------------------|-----|-----|----|
| 거창군다문화<br>가족지원센터 | 거창기독교청년회<br>이사장 표정숙 | 거창읍 강남로<br>1길 170 | 조미금 | 4명  |    |

### ○ 위탁기간: 2016.1.1. ~ 2017.12.31. / 2년

– 최초 운영: 2008.1.30. / 거창기독교청년회 위탁

### ○ 위탁사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과 다문화가족복지사업 업무

– 13개 사업, 390백만원 보조금 지원

### ○ 다문화가족 현황

| 계   | 베트남 | 중국 | 캄보디아 | 필리핀 | 네팔 | 일본 | 태국 | 몽골 | 우즈벡 | 미국 | 기타 |
|-----|-----|----|------|-----|----|----|----|----|-----|----|----|
| 322 | 131 | 70 | 39   | 27  | 22 | 17 | 7  | 3  | 2   | 1  | 3  |

## II 추진계획

### ○ 군의회 민간위탁 동의: 일반의안 상정

### ○ 2017.12월: 재계약 체결

### ○ 위탁단체와 민간위탁 기간

– 위탁단체: 거창기독교청년회 / 이사장 표정숙

– 위탁기간: 2018.1.1. ~ 2019.12.31.

### Ⅲ

## 추진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거창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제20조

## 관 계 법 령(요약)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정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

### 【거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0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②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지정취소에 관한 심의 위원회는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성·운영한다.